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 금품수수 및
건설공사 방해 금지 등 》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49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제221814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서 명시사항 추가(안 제22조제3항)	3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에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 및 지원(안 제22조제5항 신설)	10
다.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 제25조의3 제3호 및 안 제27조의2제4항제 신설 등)	17
라. 제작결함 발생 건설기계의 대여 금지 (안 제2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29
마.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 금품수수 및 건설공사 방해 금지 (안 제27조제3항, 제28조, 제40조, 제44조)	36

I.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제221814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강일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4. 7.

다. 회 부 일 : 2026. 4.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 임대차 기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사의 처우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태업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건설기계임대차의 경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조종사 포함 계약 시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5조의3, 제27조의2, 제28조, 제40조 및 제44조).

3. 검토의견

가. 건설기계임대차 등 계약서 명시사항 추가(안 제22조제3항)

개정안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 ② (생략)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u>그</u>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 -----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 <u>그</u>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현행	개정안
⑤ · ⑥ (생략)	<u>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2조1)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22조제1항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조2)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1)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2조제4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
-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살펴보면,

표지에서는 목적물의 표시로 건설기계 및 현장에 관한 사항, 사용기간, 사용금액, 가동시간, 지급시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나. 현 장

현장명	현장소재지	발주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총칙, 사용기간,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대여대금 등, 경비 등의 부담, 대여대금 지불조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건설기계 임대인
(갑)의 권리와 의무, 건설기계 임차인(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구성 체계 】

제1조	총칙
제2조	사용기간
제3조	건설기계의 가동시간
제4조	대여대금 등
제5조	경비 등의 부담
제6조	대여대금 지불조건
제6조의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7조	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제8조	“갑”의 권리와 의무
제9조	“을”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계약해제 및 해지
제11조	분쟁의 해결
제12조	기타
제13조	특약사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개정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현행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8조 및 제9조에 각각 “갑(건설기계 임대인)”, “을(건설기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조에도 해당 조의 내용과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들이 있는바, 개정안을 통하여 동 기재 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음, ‘건설기계 관련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 책임의 배분 및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사고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다만, 기계적·인적·작업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 사전적인 책임 배분 가능성, 사고조사 후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배분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관련 사고 책임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분될 수 밖에 없어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기에 한계가 있고, 계약 단계에서 사고 책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경우 상대적 약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계에 건설기계
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 및 지원(안 제22조제5항 신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
기계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⑤ · ⑥ (생략)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현행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4)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 권장되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목적물의 표시로 건설기계 및 현장에 관한 사항, 사용기간, 사용금액, 가동시간, 지급시기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4)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지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자 (원수급인)	건설업자 (임차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여부	비고
		※ 원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기재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일 이내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불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불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임차인 상 호 : 성 명 :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건설기계조종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란이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의 평균 건설기계 보유 대수가 약 1.6대이고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약 97%가 평균 건설기계 보유 대수 1.07~1.33대인 개별사업자 및 연명사업자에 해당하여 대부분 건설기계조종사를 겸하고 있는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대부분은 사실상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함.⁵⁾

【 건설기계대여업자 현황 】

(단위: 개, 명, 대)

구분	합계	일반사업자(공동)			개별사업자 (단독)
		소계	대표사업자	소속 연명사업자	
업체 수	166,335	155,741	4,348	<u>151,393</u>	<u>10,594</u>
건설기계 수	266,155	254,777	53,963	<u>200,814</u>	<u>11,378</u>
평균 보유대수	1.60	1.64	12.41	<u>1.33</u>	<u>1.07</u>

※자료: 국토교통부

*주-연명사업자: 일반 대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대표사업자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공동으로 사용

개별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가지고 대여업을 하는 소규모(5대 미만) 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166,335명 중 1~2대의 건설기계로 대여업을 하는 연명사업자(151,393명) 및 개별사업자(10,594명)가 161,987명으로 약 97%에 해당

5) 대한건설기계협회도 현재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안 제22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용 대상 건설기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 및 관련 입법례⁶⁾를 고려하면,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 및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 등 지원 대상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⁷⁾

6) 현행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의4에서 이를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가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사업무를 확인·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를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7)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함.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타 건설기계와 달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임대인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임대인 소속이 아닌 조종사의 타워크레인 조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개정안은 조종사 포함 계약 우선 고려 및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 등 지원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에서는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 등 규정의 현실성 부족 또는 강제적 적용 가능성,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⁸⁾ 이후 임차인의 건설기계조종사 직접 고용 필요성 검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바,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건설현장에서 임대인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 및 임차인이 고용한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경우 각각의 장단점,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 등 지원과 관련하여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입찰 시 우대 등 지원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은 낙찰 후에 체결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임대인 소속 건설기계조종사 관련 파업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건설기계조종사를 직접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고, 공공공사 입찰 시 조종사 포함 계약 실적 우대는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제 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다.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 제25조의3 제3호 및 안 제27조의2제4항제 신설 등)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임차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공정 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u>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 ④ (생략)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u><신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④ <u>건설기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1.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제4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신설> 8. (생략) ③ · ④ (생략)	<u>건설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호에서 정하는 교육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의 인정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2. <u>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u> <u>과 공정 관리를 할 것</u>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4조(과태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u>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현행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등이 있음.

먼저, 현행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⁹⁾는 건설기계조종사

에게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2의2¹⁰⁾는 3년 주기로 건설기계 관련

9)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내용·방법·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의2]

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나. 건설기계의 구조	1) 건설기계의 특성 2)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건설기계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3)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법령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건설기계 작업 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¹¹⁾는 안전관리 계획¹²⁾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등의 내용

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	1)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2)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	3년
나.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2)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3)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다.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 조종작업 준수사항 2) 줄걸이 작업과 신호체계이해 등 3)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가) 작업 전 점검 나) 작업 중 점검 다) 작업 후 점검	1시간	
라.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2)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 계		4시간	

11)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¹³⁾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며, 해당 안전교육에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¹⁴⁾에서는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나. 향타 및 향발기
 - 다. 타워크레인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근로자 채용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며,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¹⁵⁾에서는 대통령령

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5)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 교육 관련 규정(요약) 】

구분		의무 부과 대상	의무 내용
현행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산업 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제77조	노무를 제공받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 실시

동 규정들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제77조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¹⁶⁾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¹⁷⁾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

운전하는 사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는바, '본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해서는 그 노무를 제공받는 건설기계 임차인이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음, 제29조에 따른 사업주¹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타인 소유의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기계조종사의 사업주는 ①건설기계대여업자인 경우(건설기계대여업자가 조종사를 고용하고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를 포함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②건설기계 임차인인 경우(건설기계 임차인이 건설기계만 임차하고 조종사를 별도로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고용 관계와 상관 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본인이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¹⁹⁾

여야 한다.

18) 「산업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임차인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되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공정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대여업자 및 건설기계 임차인 각각의 안전교육 실시 의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²⁰⁾ 중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

19)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최근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조종사의 교육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분산되거나 책임을 회피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20) 개정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먼저,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본인을 조종사로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스스로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음,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조종사 교육 및 안전 관리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안 제22조 제5항에서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우선 고려 대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²¹⁾

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의 취지 또한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21) 현행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행법 시행령 제10조의4에서 이를 타워크레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가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검사업무를 확인·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를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검사업무 등) 법 제14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각각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것이라면, ‘안 제22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에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가 타워크레인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임차인에 대하여는 안 제27조의2제4항제1호²²⁾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호에서 정하는 교육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교육 의무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 관련

22)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 등의 준수사항) ④ 건설기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호에서 정하는 교육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의 인정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규정으로는 현행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등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안전교육이 추가적으로 규정되더라도 현행 규정들에 따른 교육과 그 내용이 유사해질 가능성²³⁾이 있어 보이는바, 개정안에 따른 안전교육과 현행 규정들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 간의 차별적 운영 가능성 등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별도의 안전교육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건설기계대여업자 대부분이 1인 사업자로 조종사를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3) 개정안도 건설기계 임차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라. 제작결함 발생 건설기계의 대여 금지

(안 제25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개정안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제작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의 대여를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① ----- -----. 1.·2. (현행과 같음) <u>4.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0조의2²⁴⁾는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작자등²⁵⁾

24)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작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계획과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시정조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 및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으로 하여금 제작등²⁶⁾을 한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25)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계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 또는 교육자료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제작자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갖추고 있는 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6)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 제56조의11²⁷⁾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을 ①「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²⁸⁾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②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 ③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과 관련된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투입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28)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약 97%가 평균 건설기계 보유대수 1.07~1.33대인 개별사업자 및 연명사업자에 해당함.²⁹⁾

【 건설기계대여업자 현황 】

(단위: 개, 명, 대)

구분	합계	일반사업자(공동)			개별사업자 (단독)
		소계	대표사업자	소속 연명사업자	
업체 수	166,335	155,741	4,348	<u>151,393</u>	<u>10,594</u>
건설기계 수	266,155	254,777	53,963	<u>200,814</u>	<u>11,378</u>
평균 보유대수	1.60	1.64	12.41	<u>1.33</u>	<u>1.07</u>

※자료: 국토교통부

*주-연명사업자: 일반 대표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대표사업자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공동으로 사용
개별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무실과 주기장을 가지고 대여업을 하는 소규모(5대 미만) 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166,335명 중 1~2대의 건설기계로 대여업을 하는 연명사업자(151,393명) 및 개별사업자(10,594명)가 161,987명으로 약 97%에 해당

제작결함 발생 건설기계의 대여를 금지하는 경우 시정조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³⁰⁾ 동안 해당 건설기계를 구입한 영세 건설기계대여업

29) 대한건설기계협회도 현재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설기계를 직접 조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임.

3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3. 7. 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 부서

자의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현행법 제13조³¹⁾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제8호³²⁾는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와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 ⑨ 시·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 ⑩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시검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영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에 발생한 제작결함과 그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운영 중지 명령의 필요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 전체에 대하여 대여를 금지하는 방안과 현행법령과 같이 제작결함 및 안전사고 우려의 중대성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운영 중지명령)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영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3조제5항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 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운영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사용·운행을 중지하도록 방안의 안전사고 방지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결함이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를 금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생계 위협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사등 간 분쟁 확산 우려가 있고,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리에 관한 법률인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제작결함만을 사유로 운행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임.

마. 건설기계 조종 관련 부당 금품수수 및 건설공사 방해 금지
(안 제27조제3항, 제28조, 제40조, 제44조)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건설현장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세워둠으로써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 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신설>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 등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u>건설기계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u> 1. <u>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 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 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지 아니할 것</u> 2. <u>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 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 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산 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 업중지권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 지) -----

현행	개정안
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8.·9. (생략)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 ----- ----- ----- ----- ----- ----- -----제7호의2(2회 이상 위반하거나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8호----- ----- ----- 1. ~ 7. (현행과 같음) <u>7의2.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한 경우</u> 8.·9.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27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한 자. 다만, 건설기계조종사의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하여 부</u>

현행	개정안
5. (생략)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3. (생략) <신설> 1의4. (생략) 2. ~ 4. (생략)	<u>득이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u>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4조(과태료) ① ----- -----. 1. ~ 1의3. (현행과 같음) <u>1의4. 제27조의2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한 자</u> <u>1의5. (현행 제1호의4와 같음)</u> 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2회 이상 위반하거나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건설기계조종사의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하도록 하며,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금지의무 및 위반시 제재 】

구 분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부당 금품수수 등 금지	-안 제27조의2제3항제1호-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지 아니할 것	-안 제28조제7호의2-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 정지 ※ 2회 이상 위반 하거나 수수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에 한정
		-안 제40조제5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기계조종사의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함.
건설공사 방해 금지	-안 제27조의2제3항제2호-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세워두어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	-안 제44조제1호의4- 300만원 이하 과태료

2022년 및 2024년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³³⁾에서는 금품요구와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³⁴⁾(2022년 58.7%), 초과근무수당 등 강요(2024년 87.7%), 기타 부당금품 요구(2022년 0.8%, 2024년 0.7%)의 행위가, 공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레미콘 운송거부 등(2022년 2.4%), 태업(2022년 1.8%), 출입방해(2022년 1.2%), 공사방해(2024년 0.7%)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법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하도급사에 월례비 등의 부당금품을 요구하는 관행과 건설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맺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강압적 방법은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저하, 공기 지연 및 건설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공사의 발주자 및 분양자 등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정안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수수 등과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33)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2022년	① 채용강요(2.8%), ② 장비사용 강요(3.3%), ③ 타워크레인 월례비(58.7%), ④ 전임비 등 강요(27.4%), ⑤ 기타 부당금품 요구(0.8%), ⑥ 태업(1.8%), ⑦ 현장 퇴거불응(0.8%), ⑧ 출입방해(1.2%), ⑨ 임의추가인력 투입(0.8%), ⑩ 레미콘 운송거부 등(2.4%)
2024년	① OT비(초과근무수당) 등 강요(87.7%), ② 채용 강요(10.5%), ③ 부당금품 강요(0.7%), ④ 공사 방해(0.7%), ⑤ T/C 성실 의무 위반(0.4%)

※자료: 국토교통부

34) 타워크레인 월례비란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급 이외로 주는 비공식적 웃돈을 말함.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에 건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부당한 금품 등의 요구는 주로 타워크레인 월레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불공정한 관행으로 공사비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원에서 건설사의 월레비 지급이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시³⁵⁾³⁶⁾한 경우도 있음.

35) 광주고등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판결[부당이득금](발췌)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월레비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 18, 19, 23, 27호증, 을 제4, 5, 6,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월레비 상당의 돈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레비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하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레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하여 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레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② 위와 같은 월레비 지급 관행에다가, S의 U 및 V구역 각 재개발공사에 관한 특기시방서에 원고를 비롯한 입찰참여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레비 등을 전적금액에 반영하여 입찰할 것이 규정된 점[갑 제27호증의 3, 4 중 IV. 형틀목공사특기시방서 1.의 2)항 참조], 원고가 소속된 W 협의회도 철근콘크리트 업체가 지급하여야 할 월레비 액수를 통일하기도 한 점,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 X이 원고를 설립하기 이전에 운영한 Y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로 근무한 T가 '월레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철근 선 조립 등의) 작업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제1심 증인 T의 증언 녹취서 2, 13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월레비를 지급할 당시 시공사와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는 적어도 피고들이 월레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태업 또는 작업 거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레비를 지급하게 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건설업체의 공기 단축을 위한 과도한 업무 지시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며 타워크레인 월레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업무 요구 관행의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바,³⁷⁾

타워크레인 월레비 지급 관행의 발생 배경과 지급 실태,³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현황, 적정 임금 수준 및 계약서 명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6)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판결[부당이득금]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음(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6897 판결[부당이득금]).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37) 조선비즈,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레비’ 관행 없애려 하자…민노총 ‘직접 고용해야’”, -건설사는 태업 막으려 어쩔 수 없이 지급한다는 입장, 민노총은 “공기 단축 위한 무리한 작업 지시 근절해야”, 2023.2.16. 참고

38) 타워크레인 월레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는 판례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레비 지급 관행이 발생하게 된 배경 등 건설현장의 실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노호창,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지급된 월레비에 대한 법적 평가 : 광주고등법원 2023.2.16. 선고 2021나22465 판결”, 노동리뷰 통권 제217호, 한국노동연구원, 2023.4. pp.85-88. 참고)

둘째, 안 제40조제5호에 ‘건설기계조종사의 폭행·협박 또는 위력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안 제40조제5호가 안 제27조의2제3항제1호³⁹⁾의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부당한 금품 등을 수령한 건설기계조종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개정안이 건설기계조종사 외에 부당한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하려는 취지라면, 부당한 금품 등 수수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에 건설사업자 등도 포함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건설기계 조종을 위한 면허는 현행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구분⁴⁰⁾⁴¹⁾되어 있는데, 부당한

39) 개정안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 등의 준수사항) ③ 건설기계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하지 아니할 것

40)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규정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41)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 가. 대형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2018. 4. 25.> 5. <u>건설기계</u> 가. <u>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u> 나. <u>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u> 다. <u>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u> 라. <u>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트럭지게차</u>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2018. 4. 25.>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u>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u>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있어 보임.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부당 금품 등 요구 및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한 공사 방해는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다만, 부당금품 수수는 쌍방행위이므로 조종사 행위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 등의 부당금품 제공도 같이 금지할 필요가 있고, 부당금품 등 등을 수령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조종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가중처벌,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와의 형평성 위배 소지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조종사의 부당금품 요구 및 현장점거·출입방해 행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응 방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공사중단 등 현장의 피해 확대를 막지 못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부당금품 수수·요구 및 건설현장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 임차인이 부당한 작업을 요구하거나 계약 이상의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에 대한 대가 요구를 부당한 금품 요구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금지 규정 또는 근절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